

강원특별자치도인권위원회
인권구제소위원회
결 정

【사건번호】 24신청-02

【사 건 명】 강원특별자치도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 차별

【신 청 인】 ○○○

【피 해 인】 ○○○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피신청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 문】

피신청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일제 종사자를 동등하게 처우하여 차이를 없애주는 것이 인권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신청 요지

신청인은 △△시에 소재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으로 종사하고 있으며, 매달 춘천시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는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하나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고 있다.

도는 월 15일(120시간 상당)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주 40시간)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복지수당을 지급하며, 실 근무일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날(5월 1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월 5일 이하 휴가 그리고 월 5일 이하의 법정 보수교육 참석 일을 근무 일수에 포함한다.

하지만 재가노인복지시설 상근직 종사자(주 40시간 상당)에게는 근무 일수가 아닌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월 160시간 이상(20일 상당)을 근무해야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기준을 못 채울 경우 수당의 50%만 지급하고 있다. 또한 실 근무 시간 산정 시 근로자의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월 5일 이하 유급휴가 그리고 월 5일 이하의 법정 보수교육 참석 일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랜 세월 지역사회에서 재가 노인복지를 수행하며, 복지수당 도입 초기부터 지원받아 온 신청인에게 최근 수년간 부당한 지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지원 금액의 불이익을 끼쳤음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 이에 진정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차별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

준'의 시정을 요구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신청인

위 신청 요지와 같다.

나. 피신청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구분하여 복지수당 지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이유는 첫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강보험 공단 이용자 수가로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로서, 일반적 사회복지시설(비영리 시설) 과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리 시설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복지수당은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도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근무 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장기요양서비스 필요 대상자의 가정에서 필요 시간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즉, 시간제 종사자가 많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기준의 5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사회복지시설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일제와 시간제 종사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시설 내 시간제-종일제 종사자 간 불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장기근속장려금¹⁾을 지원받는다는 점,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에게²⁾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높은 추가 예산 부담이 예상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한 기관에 3년 이상 근무, 5년 이상 근무, 7년 이상 근무에 각각 6만 원, 8만 원 그리고 10만 원을 지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약 36.5%를 차지하고, 소요 예산 규모도 전체의 약 16%가 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도는 지침 개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라 신규 진입 시설의 증가로 인해 예산 소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장 복지수당 지침 개정은 어렵지만, 복지수당은 예산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기근속 장려금 중복 여부와 최종 방침을 적극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피진정인의 제출 자료, 보도자료, 통계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1)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종사자들의 지위를 향상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같은 법 제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근거로 2005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해 왔다. 복지수당 지원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종사자들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2) 도가 마련한 지원 기준은 18개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입 이후 지원 기준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복지수당 예산은 도가 20%, 시·군이 80%를 조달한다.

3) 복지수당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 제5호, 제34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도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종사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사회복지관 등이다.

4)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의 하나로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며,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 보호 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그 밖의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설립 및 운영

1) 재가노인복지사업은 1980년대 중반 가정에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노인복지법」에 재가노인복지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며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재단 등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목적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 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본 신청 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는 노인 돌봄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국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제1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취약 노인에게 같은 법에 따라 재가급여(제23조)를 제공하는데, 그 종류는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 보호 ㉤ 단기보호 및 ㉥ 통합재가서비스 및 복지용구 제공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으로 가족 및 비공식적 노인돌봄이 국가 중심의 공적 노인돌봄 체계로 전환되었지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은 비영리 법인 설립기관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기관에 의존하는 민간 주도의 요양서비스 전달체계가 형성되었다.

2) 장기요양기관 설립·운영 요건 및 현황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초창기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절차 없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2020년 10월 이후 서비스 제공자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제39조)하여 지자체에 신고함과 동시에 별도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는 지정 심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한다. 즉,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아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 기준, 그리고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을 충족시키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시설 회계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하며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요약하면, 지정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의 기준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기도 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2025년 12월부터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6년)된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시설로 전환해야 지정 갱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중 개인 운영시설은 지속해서 증가하여 재가시설의 87.1%(18,587 개소)를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약 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50대~60대가 81.1%에 달해 유휴인력 확보, 처우개선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총 606개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고, 이중 법인 운영기관이 92개(15.2%)이고, 개인 운영기관이 514개(84.8%)이다(2024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다. 강원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 및 고용 현황

보건복지부 「2023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2월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종사자 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강원특별자치도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

(2022. 12. 현재)

| 합 계 | | 단기보호 서비스 | | 방문간호 서비스 | | 방문목욕 서비스 | | 방문요양 서비스 | | 복지용구 서비스 | |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 | 주야간 보호서비스 | |
|------|-------|----------|-------|----------|-------|----------|-------|----------|-------|----------|-------|------------|-------|-----------|-------|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시설 수 | 종사자 수 |
| 569 | 9,428 | 2 | 9 | 15 | 33 | 136 | 1,488 | 248 | 6,713 | 14 | 16 | 29 | 96 | 125 | 1,552 |

도 재가복지시설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개인이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시설이 전체 569개 시설 중 431개로 75.7%를 차지하고, 종교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 122개로 21.4%를 이룬다.³⁾

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및 기준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전월 실제 근무일이 15일 이상인 종사자에게 매월 지원된다. 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2) 지급 기준금액 : 근무연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한다.

- 5년 이상 근무자 : 월 180천 원
- 1년 이상 ~ 5년 미만 근무자 : 월 150천 원
- 1년 미만 근무자 : 월 100천 원

3) 별도 기준

- 지원 대상 및 기준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전일제 고용 종사자와 시간제 고용 종사자 모두 지원 대상이다. 전월 실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동일 기준액을 지원한다. 그리고 실 근무 시간이 60시간 이상 160시간 이하일 경우 기준금액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3) 도 자료에 의하면, 복지수당을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총 4,287명에 이르고, 그 중 1,801명이 전일제 상근직 종사자로, 약 42%에 달한다.

- 지급 기준금액

- 5년 이상 근무자 : 월 180천 원(50% 지급 시* 월 90천 원)
- 1년 이상 ~ 5년 미만 근무자 : 월 150천 원(50% 지급 시* 월 75천 원)
- 1년 미만 근무자 : 월 100천 원((50% 지급 시* 월 50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 비교>

(2024년 현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 | |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 | | | | |
|-------------------------------|--|---------|---------------------------------|-------------|---------|----------------------------|-------------|--------|
| 지원 기준 | 근무년수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근무년수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근무년수 | 지원금액 |
| 15일 이상 근무자 (월) | 5년 이상 | 월 180천원 | 160 시간 이상 근무자 (월) | 5년 이상 | 월 180천원 | 60 시간 이상 160 시간 미만 근무자 (월) | 5년 이상 | 월 90천원 |
| | 1년 이상 5년 이하 | 월 150천원 | | 1년 이상 5년 이하 | 월 150천원 | | 1년 이상 5년 이하 | 월 75천원 |
| | 1년 미만 | 월 100천원 | | 1년 미만 | 월 100천원 | | 1년 미만 | 월 5천원 |
| 실 근무일 및 실 근무시간 산정 | - 아래 포함 - ① 근로자의날,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월 5일 이하 휴가, ④ 월 5일 이하의 법정 보수교육 참석일 | | 미포함 | | | | | |

3) 도는 복지수당 지원기준을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도가 마련한 지원기준에 따라, 18개 시·군은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며, 도가 예산의 20%를, 시·군이 나머지 80%를 부담한다.

5. 판단

가. 판단 기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19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평등권 침해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비교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청인은 사회복지종사자 복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별도 불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은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주 40시간 이상 전일제)에게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차등 대우하고 있다.

1) 주 40시간 이상 전일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월 실 근무일이 15일 이상(120시간 상당)이면 복지수당을 지급하지만, 동일한 전일제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실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20일 상당)일 때에만, 즉 5일 더 일해야 같은 금액의 복지수당을 지원한다. 월 60시간 이상 160시간 미만일 경우 기준금액의 50% 지급한다.

2) 기준은 실 근무일에 근로자의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월 5일 이하 휴가 및 월 5일 이하의 법정 보수교육 참석 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지만, 전일제 재가복지시설 종사자의 실 근무 시간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다루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가 본질적으로 동일성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

봐야 한다. 두 비교 대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1996.12.26. 96헌가18 결정, 2001.11.29. 99헌마494 결정). 따라서 일반 사회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가 복지수당 지원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를 일컬으며,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18개 개별 법령이 시설의 종류와 사업 내용을 규정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0여 가지가 넘는 광범위한 복지시설 종류와 사회복지사에서 조리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 다양한 직종 종사자⁴⁾를 포괄한다(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이는 복지영역과 직종 등에 상관없이 법령에 따라 국가의 의무인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에서 사회복지서비스⁵⁾ 제공을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사회복지사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복지수당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복지증진 및 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사법이 규정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⁶⁾에서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며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 도 복지수당은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되는 부가급여(202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참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 조항 및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일반 사회복지시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는 사회복지사,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사회재활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상담원, 상담지도원, 요양보호사, 직업훈련교사, 물리·언어·작업·청능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위생원 및 경비원 등이 포함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사회복지사업법」제2조6호) 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사회복지사업법」제2조4호)

종사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법령이 규정하는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근거로 「노인복지법」이 규정하는 데로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시설이며, 동시에 그 시설 종사자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수당 지급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모두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하는 자라는 특성을 공유하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도의 복지수당은 궁극적으로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 노동의 공적 성격과 책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라 할 것인데, 그 지급 기준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불리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동일한 두 비교 대상을 달리 취급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결정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2가지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결정). 첫 번째는 비례성 심사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차별행위로 인해 기본권 제한이 중대한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하여 비례성 심사(차별행위의 불가피성, 차별행위의 균형성 심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화된 심사 척도를 가지고 원칙적으로 차별행위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자의성 심사)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본 신청의 경우 헌법이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완화된 심사 기준(자의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자의금지원칙은 평등권 위반 심사 시 심사척도로서 정책 결정권자의 행위가 최적의 수단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차별에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헌재 2012. 5. 31. 2011헌마241 판결).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을 명시하고, 그 구현을 위해 34조 제1, 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사회적 기본권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국민의 사

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 법령을 통해 다양한 층위의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달체계는 법률을 통해 제공 주체(공공 또는 민간)를 달리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본 신청사건이 다루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이다. 국가는 재가노인의 요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처음 도입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공적 주체가 취약했기 때문에 노인돌봄서비스 공급을 민간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간기관은 사회보험이라는 공적 재원에 의존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를 위하여 인건비 등의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므로 노인돌봄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의 과제를 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인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선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은 시설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바로 국가의 법령과 제도에 따라 구축된 사회보장시스템 최일선에서 요보호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이기에, 달리 대우해야 하는 이유를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주체 성격, 즉 영리·비영리 기관에서 찾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 더구나 재가노인돌봄이 비영리 기관을 통해 주도적으로 제공되게끔 사회보험을 설계한 것은 국가이며, 개인 운영기관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및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법」이 정하는 시설기준, 인력 요건 및 운영 기준을 충족해 설치·운영해야 하는 노인복지시설이며, 회계 점검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복지수당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근무하는 운영시설이 영리 시설인지 비영리 시설인지 여부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대우를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 할 여지가 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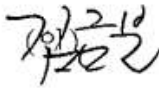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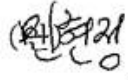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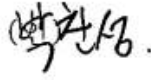


더 나아가 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도의 주장은 복지수당 지원의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지자체의 책무로 부과했다는 점, 강원특별자치도가 영세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민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 중 일부는 민간 영리 시설이 아닌 비영리 시설(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도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를 달리 처우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 의무를 지고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단을 결정하여야 하지만, 그 실현 방안이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유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 3호 : 규약 제2조 당사국 의무의 본질). 복지수당 지원은 도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결정이며, 그 형성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보장됨으로 명백히 비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은 이상 지자체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본질적으로 차이를 갖는 이질 집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가 부담해야 할 추가 예산 규모가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고, 차등을 매꾸는 실효적인 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장기근속수당 등 여타 중복지원은 제외하거나, 수당 수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비차별적 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도가 복지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 전일제 종사자에게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다 더 많은 근무시간을 요구하고, 법정유급휴일, 연가 및 법정 의무교육 참석일 포함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적 결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차등 없는 방향으로의 개선을 권고한다.

이에 조치 의견으로 위와 같은 차별적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전일제 종사자를 동등하게 처우하여 차이를 없애주는 것이 인권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강원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위원장 | 김 금 분 |  |
| 위 원 | 민 현 정 |  |
| 위 원 | 박 찬 성 |  |
| 위 원 | 우 강 호 |  |
| 위 원 | 이 정 동 |  |
| 위 원 | 지 소 현 | (인) |
| 위 원 | 한 혜 정 | (인) |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 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4. 방문 목욕서비스 :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서비스

②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
8.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8. U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

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9.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참조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

< 출처: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

| 소관 부처 | 시설종류 | 세부종류 | | 관련법 |
|-----------|-----------|--|---|----------------------------------|
| | | 생활시설 | 이용시설 | |
| 보건 복지부 | 노인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문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노인복지법」 |
| | 복합노인복지시설 |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 | 아동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상담소 아동전문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문기관 | 「아동복지법」 |
| | 장애인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복지법」 |
| | 어린이집 |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 | 정신건강증진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 노숙인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 사회복지관 | | 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 |
| | 지역자활센터 | | 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 다함께돌봄센터 |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 「아동복지법」 |
| 질병 관리청 | 결핵·한센시설 | 결핵·한센시설 | | 「사회복지사업법」 |
| 여성 가족부 | 성매매피해지원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성폭력피해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가정폭력보호시설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디지털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 | 건강가정지원센터 | |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
| | 청소년복지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

| 대상자별 | 형태 | 시설 종류 | 소관부서 | 관련법령 | | | |
|-------|---|-----------------------------------|--|---|--|---------------------------|---|
| 노인 | 생활 | · 의료 |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요양보험운영과 | 「노인복지법」 제31조 | | |
| | | · 주거 |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 노인정책과 | | | |
| | | |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 | | |
| | 이용 | · 재가 |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지원) | 요양보험운영과 노인정책과 | | | |
| | | | · 여가 | · 노인복지관 · 경로당, 노인교실 | | 노인지원과 | |
| | | | |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 |
| | | 아동 | 생활 |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자립지원시설 · 공동생활가정(학대피해아동쉼터로 지정된 곳에 한함) | | 아동권리과 | 「아동복지법」 제52조 |
| 이용 | ·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 | | 아동권리과 | | | |
| | | | | · 지역아동센터 · 학대피해아동쉼터 | 인구정책총괄과 아동학대대응과 | | |
| | | | | · 다함께돌봄센터 | 인구정책총괄과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
| 장애인 | 생활 | | · 거주시설 |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 |
| | | | | · 쉼터 | · 피해장애인쉼터 · 피해장애아동쉼터 | | |
| | | | | | 이용 | |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 | | ·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 장애인건강과 | | | |
| | · 직업재활 시설 | ·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 | 장애인자립기반과 | | | |
|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 | |
| | 영유아 | 이용 | · 어린이집 |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 보육기반과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
| 정신질환자 | 생활 | |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 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6조 | | |
| | 이용 | | ·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 | | | |
| 노숙인 등 | 생활 | · 노숙인자활시설 | · 노숙인재활시설 | · 노숙인요양시설 | 자활정책과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
| | 이용 |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 노숙인급식시설 |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노숙인진료시설 | · 쪽방상담소 | | | |
| 지역주민 | 이용 | | · 사회복지관 | 지역복지과 | 「사회복지사업법」 | | |
| 기타시설 | 이용 | | · 지역자활센터 | 자활정책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